

	보도자료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Consumers Union of Korea ☎ 02-795-1994 (담당 : 김수연 팀장) www.cuk.or.kr
	보도일시	2020. 11. 27 (금) 배포 즉시	

한국소비자연맹, 국회에서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 권리장전' 선언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단계 소비자중심 가치실현 위한 소비자 8대 권리 제정

-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과 공동발표, 11월27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
- 데이터 경제시대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틀 마련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간 중심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 원칙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개발자 관점의 논의는 많이 진행된 반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 소비자 관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미래 사회의 핵심요소인 인공지능이 인간성을 존중하고 함께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하고자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 권리장전'을 만들게 되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1월27일(금)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 권리장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과 권리장전을 만든 디지털소비자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한국소비자연맹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진행하였다.

소비자 권리장전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소비자연맹 디지털 소비자위원회(위원장 최경진)를 중심으로 1년여간 작업을 진행해 총 8개 소비자권리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 권리장전'을 만들었다.

- * 디지털소비자위원회 : 위원장 최경진 교수(가천대), 위원 가정준 교수(한국외대), 권창범 변호사(법무법인 인), 김명수 교수(강원대학교), 나종연 교수(서울대), 박민철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혜정 교수(서울시립대), 임 용 교수(서울대)

8개의 소비자권리는 **포용성, 공정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성과 신뢰성, 투명성, 개인정보 통제권, 책임성,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선포식에서 권리장전에 참여한 8명의 위원이 각 조항별로 의미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권리장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권리는 **포용성**으로 정보 취약계층이 배제 없이 인공지능 실현 가치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 **공정성**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인공지능 기술 또는 시스템이 공정하게 개발, 활용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 번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차별과 모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네 번째, **안전성과 신뢰성**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으로 인해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제거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권리장전에 포함되었다. 다섯 번째, **투명성**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알 권리 및 설명 요구 권리, 이의 제기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점에서, 여섯 번째 **개인정보 통제권**은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 **책임성**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권리장전 이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미준수 시 책임을 요구할 권리며 마지막 여덟 번째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절한 구제를 보장하고 다른 소비자와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권리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인공지능과 관련 이용자 보호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진전되지 못해, 8대 권리를 만들고 해석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인 오늘이 시작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8대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진 위원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권리장전이 향후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 집행 및 입법의 기준으로 삼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권리장전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내년초에 영문화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행사영상은 유튜브에서 한국소비자연맹을 검색하면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며 권리장전 전문은 본 보도자료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능정보사회 소비자 권리장전

(A.I. 소비자 권리장전)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기반임을 인식한다.

이에 우리 시민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국가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지능정보사회의 소비자 권리장전'을 선언한다.

하나. 포용성

소비자는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인공지능이 실현하는 긍정적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집행과 상품·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에 있어서 자신의 욕구 및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권리를 가진다.

둘. 공정성

소비자는 자유로운 선택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인공지능 기술 또는 시스템이 공정하게 개발, 적용 및 활용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셋.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비자는 디지털시대의 다양성을 보장받으며,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넷. 안전성과 신뢰성

소비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으로 인해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제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섯. 투명성

소비자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알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 및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여섯. 개인정보 통제권

소비자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일곱. 책임성

소비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권리장전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법과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덟.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

소비자는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를 보장 받고, 다른 소비자와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2020. 11. 27

국회의원	한준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디지털소비자위원회	위원장	최경진
				위원	가정준
				위원	권창범
				위원	김명수
				위원	나종연
				위원	박민철
				위원	변혜정
				위원	임 용
				위원	정지연